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2020년 6월 1월 단체 내부 검토 후 수정·보완한 버전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해 합니다.

(양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② 사업지등록번호(고유번호)	22-82-01120
③ 대표자 성명	이명숙	④ 기부단체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ksvrc@sisters.or.kr	⑥ 사업연도	2019-01-01 ~ 2019-12-31
⑦ 전화번호	02-338-289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08-06-30
⑨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106,611,315	8월	28,041,647	23,846,375	87,346,559
1월	22,917,360	41,122,892	88,405,783	9월	35,001,816	29,174,245	93,174,130
2월	28,864,446	30,231,084	87,039,145	10월	46,770,128	40,888,304	99,055,954
3월	42,481,732	38,227,068	91,293,809	11월	35,541,244	25,617,338	108,979,860
4월	27,113,006	46,254,091	72,152,724	12월	40,837,118	34,098,990	115,717,988
5월	27,615,391	27,292,986	72,475,129	합계	402,988,594	393,881,921	-
6월	41,857,830	23,887,946	90,445,013	차기이월	-	-	-
7월	25,946,876	33,240,602	83,151,287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19-04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퇴소자립지원금)	2	윤**	1,000,000
2019-05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지정기부금)	1	최**	2,000,000
2019-06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퇴소자립지원금)	1	김**	1,000,000
2019-06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퇴소자립지원금)	1	윤**	1,000,000
2019-12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퇴소자장학지원금)	1	이**	1,000,000
2019-12	성폭력피해생존자지원(지방거주내담자지원금)	4	김**	454,604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19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18	한국성폭력상담소	234,155,683
	복리후생비	18	한국성폭력상담소	12,128,450
	관리비	1	태기금속 외	18,869,631
	사무비	1	컴닥터허준 외	7,684,126
	대외협력사업비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2,462,200
	사무국사업비	1	박** 외	13,692,970
	상담사업비	912	김**외 911명	20,342,464
	온라인사업비	1	스마트레이저 외	220,591
	인권사업비	1	문** 외	3,262,550
	기획조직사업비	1	팍스키친 외	19,423,360
	정책개발사업비	1	김** 외	2,409,060
	홍보출판비	1	디자인이즈 외	6,951,670
	연구소운영비	1	아리에뜨 외	8,513,895
	모두를위한낙태최폐지공동행동	1	트루오디오 외	10,674,530
	법인전출금	1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5,000,000
	퇴소자지원비	66	김** 외	8,735,345
	열림터연구사업비	1	김** 외	1,759,880
생활인지원비	17	아디프 외	16,385,086	
프로젝트 자부담	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1,210,430	
합 계		1,045		393,881,921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제출인: 이 명 숙 [인]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⑮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⑮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⑯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⑳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